##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559

발의연월일: 2021. 11. 26.

발 의 자:이종성・김상훈・김예지

김용판 · 김형동 · 박형수

서일준 • 정운천 • 정진석

조명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24.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 2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제5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23호의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14. 제56조제1항제25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	
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 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 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1. ~ 22.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② ~ ⑧ (생 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저학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 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

1. ~ 22. (현행과 같음)
2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4.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같은 법 제
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
행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
이집
<u> </u>
∥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①

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 ② (생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 략) <u><신 설></u>

<u>.</u>
1. ~ 5. (현행과 같음)
6.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
항제23호의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항 제24호의 건강가정지
원센터
② (현행과 같음)
3
<u>_</u>
·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56조제1항제25호의 발달
11. /1100年/1110/11/20年刊 日日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
	원업무 수행기관 및 장애영유
	아를 위한 어린이집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